

한국원자력학회

우)34166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94(장대동 342-1, 뉴토피아빌딩 4층) 전화 042) 826-2613 전송 042) 826-2617 담당 : 노예진

http://www.kns.org E-Mail:web@kns.org

한원회 제2022-2호

시행일자 : 2022.1.3.

수 신: 전회원

참 조:

제 목: 2022년도 회비납부 안내

1.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, 우리 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심과

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. 우리 한 하에는 5.800여 회원님과 56개 특별회원의 지원에 한영어 간존 한 회 호

2. 우리 학회에는 5,800여 회원님과 56개 특별회원의 지원에 힘입어 각종 학회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으며, 금년도 원자력발전을 위한 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3.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(회비 등) 2항에 따라 연회비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(*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(2020.10.21. 개정))

- 아 래 -

가. 회비종류 및 금액

구 분	회 비	비고
연회비	50,000원	단, 대학원 재학생 5천원
평생회비	500,000원	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
만 65세를 초과한 회원	면제	
학생회원(학부생)	면제	

나. 납부기한 : 2022년 5월 31일

다. 납부방법 : 신용카드,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선택

○ 홈페이지(www.kns.org) 회원라운지-마이페이지-회비결제

<참고사항> 정관 시행세칙 중 회비 납부 시기 및 회원의 권리에 대한 조문

제3조 (회비 등)

- ②연회비는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. (2020. 10. 21 개정)
- ③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춘/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시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. (2019. 10. 24. 신설)

제11조의 3 (선출직 평의원의 선출) (2019. 10. 24. 신설)

- ① 평의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.
- ②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.

제11조의 4 (임원의 선출) (2019. 10. 24. 신설)

- ① 임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.
- ② 임원 선출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.

